# 한국전력 모펀드 2016년 출자사업 계획 공고

한국전력 모펀드 2016년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I . 개 요

## 1. 출자 규모 및 출자 대상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총 250억원 내외	
기본 조건		- 창업자·벤처기업 등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투자 - 투자기간 내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전문적으로 투자 단, 조합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 해당 투자비율을 적	<del>a</del>
출자 대상 및 신청 자격	창업투자조합	비상장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중소기업)·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	<b> </b> 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목적으로 신기하는 조합	술사업금융사
운용사 선정방법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전담팀, 조합
접수 마감 시한		2016. 4. 12(화) 14:00	
조합 결성 시한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2개월 이내 연장 가능)	

## 2.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분야	주요 투자 대상 및 투자의무 비율	최대출자비율
차세대 전력에너지·융합	<ul> <li>에너지 新산업<sup>주1)</sup> 및 에너지 관련 융합 산업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신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① (에너지 新산업) 新사업모델<sup>주2)</sup> 및 핵심 기술<sup>주3)</sup> 분야 사업화 기업</li> <li>② (융합산업) 스마트그리드, ICT전력인프라 등 에너지 융합 관련 기술<sup>주4)</sup> 사업화 기업</li> <li>③ (신장동력분야) 17대 신성장동력분야 중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관련 기술 사업화 기업</li> </ul>	50%

- 주1) 에너지 新산업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에너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산업
- 주2) 新사업모델 : 수요 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에너지 자립섬,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전기자동차, 태양광 대여,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 타운 등
- 주3) 핵심 기술: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 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EMS), 온실가스 포집처리(CCS) 등
- 주4) 에너지 융합 관련 기술 : 타 산업분야 기술을 에너지분야(新사업모델, 핵심기술분야, 신성장동력분야 중 신재 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관련 기술)에 적용·융합하는 기술

#### 3. 출자 분야별 조합 형태

분 야	조합 형태	
차세대 전력에너지·융합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주1) 상기 분야는 중점지원분야에 해당

### 4. 상세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억원)

분 야	한국전력 모편드 출자 예정액	결성목표액
차세대 전력에너지·융합	250	500

주1) 단일펀드(1개, 최소결성규모 500억원)로 선정 예정

주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억원 이내 출자 예정

### Ⅱ. 선정 우대 및 배제(취소)

### **1. 선정 우대기준**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구 분	가점 여부
중점지원분야인 경우	0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A등급 이상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실시된 평가)	0
약정총액의 10% 이상 외국자본 출자 참여 (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0
자조합 운용사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모태조합이 출자한 자조합을 해산하고, 자조합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0
조합 존속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0
결성시기별 약정총액 대비 투자금액 비율이 높은 경우	0
약정총액의 15% 이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지역 금융기관 등 출자 참여. 단, 수도권 지역은 제외(서면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	0

### 2. 선정 배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 선정 배제

- ◆ 선정 배제 대상은 운용사 선정 전체 기간에 걸쳐 적용하되,
  아래 박스에 표시한 항목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배제 가능
  - 가. 회사 및 조합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최근 2년 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마. LLC의 경우 핵심인력 전원이 유한회사의 사원이 아닌 경우

###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적용〉

-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중진기금 및 모태펀드의 누적출자금이 다음 각 호의 모두 를 초과하는 경우 (LLC형은 제외)
  - ① 업무집행조합원 납입자본금의 10배
  - ② 자기자본의 5배
  - ※ 창업지원법령상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조합은 정부 누적출자금 합산에서 제외
-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 중인 조합의 **투자예정자산**(약정금액의 80% 기투자 금액)의 합이 전문인력<sup>\*</sup> 1인당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단,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는 제외)
  - ※ 전문인력의 인정 기준은 각 투자조합의 소관 법령에 따름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①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억원 이하인 경우 : 2명
  - ②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2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인 경우: 3명
  - ③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8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명
  - ※ 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대표펀드매니저는 소관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 참여가 가능한 핵심인력 기준

※ 신청 자조합의 각 핵심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출자약정금 총액의 60%
-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참여(규약상 명시된 경우)하고 있는 투자조합의 약정액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각 펀드규모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1,000억원

- 3. 기존조합의 신규조합 참여제한 규약 관련
  - 신청조합 핵심인력이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상기 투자조합 운용 한도 기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조합 규약에 핵심인력의 동(同)신규조합 참여가 제한되어 있으나 규정 개정 등으로 동 참여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4.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 산정 시,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지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leq 3$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1,000억원

- 5. 선정 조합의 제안서 제출일부터 결성일 사이에 추가로 타조합을 결성하는 등 사후적으로 상기 1 내지 4호의 핵심인력 참여 불가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함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최근 3년 이내에 5회 이상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이 가장 최근에 실시된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D등급 이하및** 평가 보류된 경우
- 신청 자조합의 핵심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처분	1호	2회 이상
경고	_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상기 표 상의 기간까지임
-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 □ 선정 보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보류 가능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 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 소된 경우

### □ 선정 취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주)가 선정 취소 가능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인 경우
  - 라.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유 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마.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 바. 대표 펀드매니저가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 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사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가.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나. 자조합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다.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제재 사항

- 결성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상기 선정취소 조건 중 가. 결성규모 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 거부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초 도래하는 모태펀드 정시사업을 포함하여 최소 1회 이상 출자 제한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유한책임회사(LLC)형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대표펀드매니저 또는 투자전문인력이 신규 유한책임회사 (LLC)형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연장된 결성시한일 및 선정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 총회일 기준)까지 규약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모태펀드 출자 제한 가능. 다만, 중점지원 분야 자조합 등으로서 약정총액 대비 출자비율이 60% 이상인 자조합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출자 제한
- 선정 조합 중 외국자본의 참여 의사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금액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출자유치 제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 터 1년 범위 안에서 최소 1회 이상 출자제한

### Ⅲ. 주요 출자 조건

항 목	내 <del>용</del>	
- ,	ਮਿ <del>ਨ</del>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한국전력 모펀드 우선손실충당	· 한국전력 모펀드는 조합의 운용 결과 손실 발생시 우선손실충당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선손실충당을 하지 않음	
자조합의 투자의무	<ul> <li>조합 결성액의 일정 비율<sup>*</sup>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li> <li>★ '일정비율'이라 함은 해당 조합에 부여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60%, 70%)</li> <li>・ 다만, 한국전력 모펀드에서 결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한국전력 모펀드 출자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한국전력 모펀드 출자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한국전력 모펀드에서 선정시 결정한 조합 규모에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 의무로 부여</li> </ul>	
증액방식조합 (Multiple Closing) 출자 조건	· 한국전력 모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에 따라 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제안서 접수미감일기준)에 신규 선정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단, 타 조합원 전원 동의 총회의사록 등 관련한 제반 서류를 추가로 제출 (예 : 조합자산평가보고서, 조합규약, 신규조합원의 출자의향서 등)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	
조합 존속기간	· 5년 이상	
조합 투자기간	· 4년 이내	
관리보수	<ul> <li>관리보수 지급기준은 아래 내용에 따름</li> <li>결성일로부터 3년 이내 : 조합약정총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 투자잔액(분기말잔액) × 결성규모 적용요율</li> <li>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li> <li>300억원 이하: 22%이내 /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20%이내 / 600억원초과: 1.8%이내</li> </ul>	

항 목	내 용
기준수익률	· 5% 이상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의 20%이내
	· 한국벤처투자(주)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자금 관리
수탁회사	·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회계감사인	· 한국벤처투자(주)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감사인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
ERP	· ERP 사용 의무화
기 타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

### Ⅳ.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 → 최종 선정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계정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 자	내 <del>용</del>	비고
'16. 4. 12(화)	제안서 접수 마감	14:00까지
'16. 4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16. 7월	조합 결성 완료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V.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 **지원 방법** : 제안서 양식(별첨 참조)에 의거한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 접수 마감일
  - 2016. 4. 12(화) 14:00
- 출자 설명회
  - 일 시 : 2016. 3. 30(수) 14: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지하 1층 블루룸 ※ 설명회 참석시 공고문 출력하여 지참 요망

### Ⅵ. 기 타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Ⅶ. 접수처 및 문의 방법

○ 접수처 : 한국벤처투자(주) 투자운용본부

137-88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 1706-5) VR빌딩 5층

○ 문의 방법 : 투자운용본부

전화(02-2156-2075) / E-mail (fof@k-vic.co.kr)

2016. 3. 22.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 1차심사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대분류	소분류	주요 평가항목
	대표이사/주주	대주주의 재무적 안정성, 대주주의 변동 횟수, 자기 자본 순이익률, 대표이사 업계 경력
	재무안정성	자본충실도, 총자산 수익률
운용사	조합운용실적	청산조합 수익률, 모태펀드 자펀드 평가수익률
	투자실적	최근 결성 조합의 약정총액 대비 누적 투자금액, 창업자 투자 비율, 전문인력당 평균 미투자잔액
	준법성	최근 법규 등 위반 내용
<b>→</b> āL	핵심인력 경력	핵심인력의 관련 분야 경력(평균), 대표펀드매니저의 펀드운용 경험, 신청 펀드 집중 가능 여부
조합 운용 	핵심인력 투자실적	최근 투자/회수 실적, 투자 금액 및 투자 기업수
능력	팀웍 및 관리능력	대펀/참여인력이 팀으로 함께 근무한 기간(평균), 핵심인력 중도이직 및 근속기간(평균), 리스크/컴플 라이언스 조직 및 전담인력 존재 여부
가점	공고문 II-1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 \* 총 100점 만점 중 운용사 50점, 조합운용능력 50점이며, 가점은 최대 20점
- \* 창투사 이외의 운용사에 대한 평가비중 및 평가항목은 다소 상이함